

『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08년 12월 8일

나. 발 의 자

김도문 의원, 박세채 의원, 이갑선 의원, 윤서규 의원
한정우 의원, 구자근 의원, 허 복 의원, 김태근 의원
우진석 의원, 김영호 의원, 석호진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12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12월 18일

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김도문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공동이용 농업기계 구입에 한하여 100만원 미만 지원도 가능토록 하여 개별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,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촌 환경 개선을 도모

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지원대상은 농업인에서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, 공동이용 농업기계에 한하여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농업기계 구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제1항)

라. 참고사항

- 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 제4조제1항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나 명 철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농업기계 가격과 이용 빈도를 고려할 때 개별구입보다는 공동구입이 더 효율적인 농업기계 구입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지원대상을 농업인에서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 공동이용 농업기계에 한하여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농업기계 구입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3조제1항)

○ 조례안 검토결과

- 현행 조례의 지원범위는 농업기계가격표에 의한 구입가격 100만원 이상 50% 지원에 200만원 한도로 보조하고 있음
- 가격과 이용 빈도를 고려할 때 개별구입보다는 공동구입하는 것이 더 유용한 농업기계 구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으로 농가 부담을 줄이고, 농업기계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쟁력 제고로 농촌 환경 개선에

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